

공 고**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 - 645호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90호(2011.09.2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호(2013. 01. 1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되고 2008.07.30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09-79호(2009.07.22.)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4-01호(2014.01.02.)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-31호(2015.02.26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15-30호(2015.02.26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성 북 구 청 장 인**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·공고****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- 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1재정비촉진사업

2. 사업시행자

- 주 소 :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03-14 3층 (☎ 943-5384)
- 성 명 :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3. 공람 · 공고 내용 (변경없음)

가. 사업명칭 :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44-24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80,513.30㎡

라. 건축계획

- 획지1-1 : 지하2층/지상29층, 10동, 공동주택(아파트) 9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획지1-2 : 지하2층/지상12층, 1동,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) 90세대 및
근린생활시설/교육연구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5,129.50㎡, 녹지 5,274.80㎡, 학교 19,464.20㎡,
공공공지 1,032.40㎡, 공공청사 299.50㎡, 청소년수련시설 450.30㎡

4. 변경내용 : 사업시행기간

구분	기존	변경	변경사유
사업시행기간	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	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44개월	사업시행기간 만료예정 (2016.7.21.)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 연장

5. 공람기간 : 2016. 6. 23. ~ 2016. 7. 7. (14일간)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41-2832)

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943-5384)

7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
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
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인 사

《발령 제 124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장 경 진	성 북 구 전 입 을 명 함 삼 선 동 근 무 를 명 함	동 작 구	지 방 행 정 서 기
2	이 기 호	도 봉 구 전 출 을 명 함	삼 선 동	지 방 행 정 서 기

(2016. 6. 20 字.)

《발령 제125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정 지 영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6.06.20.~2017.06.19.까지)	공원녹지과	지 방 녹 지 서 기

(2016. 06. 20.字). 끝.

《발령 제126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임 은 숙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16.6.26.~2017.06.25.일까지)	행 정 국	지 방 행 정 주 사 보

(2016. 6. 26 字.)

